#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81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양금희·김형동·이주환

윤창현 · 지성호 · 백종헌

강대식 · 서병수 · 서일준

윤재옥 • 추경호 • 김기현

윤두현 · 김예지 · 이 영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도 그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서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 작성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26조 제1항제1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로 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 공표) ① ~ ③ (생 략)	·공표) ① ~ ③ (현행과 같
	승)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4
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	
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	<u>이 경우 자료</u>
<u>설&gt;</u>	제출 요구를 받은 에너지 유관
	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u>라야 한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	6
성을 갖춘 기관을 <u>지정하여</u> 제	대통령령으로
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	<u>지정하여</u>
성・분석・관리 및 제5항에 따	
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u>	제26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u>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u>L</u>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 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
- ② (현행과 같음)